1. **정보수집 정책의 관점에서 개인의 동의를 얻는 2가지 방식**

일반적으로 옵트인과 옵트아웃을 개인 정보 정책과 연관된 부분에서만 논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개인 정보만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개념

개인 정보보호 법률에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여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있어 옵트인 방식으로 어려움이 있어, 옵트아웃 방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

* 1. 옵트인 방식(Opt-in) : 옵트인(Opt-in)이란 옵션인(Option-in)의 약자

정보주체 즉, 당사자에게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정보보호 법률에 따라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흔히 ‘동의’를 먼저 한 후, 개인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다시 말해 옵트인은 선 동의, 후 사용을 통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를 보호

사례 : 국내의 웹사이트에 가입 할 때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

* 1. 옵트 아웃 방식(Opt-out) : 옵트 아웃(Opt-out)이란 옵션아웃(Option-out)의 약자

옵트 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한 후,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개인 정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

다시 말해 옵트아웃은 선 사용, 후 배제로서 마케팅 등에 있어 개인 정보를 활용

사례 : 외국의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 정보 권리를 보호하는 옵트인 방식을 적용하지만, 기업 등의 민간분야에서 옵트아웃 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

1. **디지털 발자국의 의미와,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2가지 기능의 명칭**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웹상에 남겨 놓는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일컫는 말로,

디지털 기록을 뜻하며, 디지털 흔적 또는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말한다.

1. 휘발성은 데이터에 생애 주기가 존재하여 일정 시간이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
2. 자기결정권은 데이터 게시 후 복제와 관계 없이 본인이 원할 때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삭제될 수 있는 기능